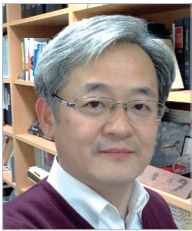


기사 표절에 관대한 한국



글.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절로 정직을 받은 새리 호르위츠에 관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출처: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 1) Paul Farhi, "Washington Post suspends reporter for plagiarizing stories on Tucson shooting", The Washington Post, March 16, 2011.
- 2) 다음은 표절당한 기사 : Michael Kiefer, "Feds' new indictment charges Loughner with 49 counts", The Arizona Republic, March 5, 2011; Dennis Wagner, "Details of Loughner's search warrant revealed contents of safe hint at his mind-set", The Arizona Republic, March 11, 2011.

폴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27년 베테랑 기자, 새리 호르위츠(Sari Horwitz)는 2011년 애리조나 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애리조나 리퍼블릭(The Arizona Republic)'(이하 '리퍼블릭 지')의 기사를 표절한 혐의로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받았다.¹⁾ 베낀 기사는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애리조나 주 출신 기퍼즈 연방하원의원 총격 사건의 피고인 로우너(Loughner)에 관한 기사 두 편이었다.²⁾ 호르위츠는 온라인판에 오른 리퍼블릭 지의 기사를 같은 날 잘라 붙이는 방식(cut and paste)으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³⁾ 필자가 직접 리퍼블릭 지와 워싱턴포스트의 각 두 편의 기사를 대조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사에서는 연방민권법(Federal civil-rights law)에 관한 두 개의 문장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하였고, 압수수색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총 여덟 개의 문장이 거의 동일했다.⁴⁾



전 뉴욕타임스 기자 제이슨 블레어
(출처: AP Photo)

3) 다음은 표절 기사 : Sari Horwitz, "Federal grand jury in Tucson shooting indicts Loughner on 46 new charges", The Washington Post, March 5, 2011; "Court documents: Police found evidence of Loughner's obsession with Giffords", The Washington Post, March 11, 2011.

4) 한편, 표절 기사와 피표절 기사, 총 4 편의 기사는 그 문단(Paragraph)이 대부분 하나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기사에서 리퍼블릭 지는 22개의 문단, 워싱턴포스트는 24개의 문단으로, 두 번째 기사에서 리퍼블릭 지는 15개의 문단, 워싱턴포스트는 11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

5)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편집자 명의의 사과문이다. "Editor's Note: An Apology", The Washington Post, March 17, 2011.

6) 이상, Wikipedia의 'Jayson Blair' 중 'Plagiarism and Fabrication Scandal' 부분 참조.

표절 기사가 나간 후 표절 확인과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매우 신속했다. 리퍼블릭 지의 편집자는 워싱턴포스트의 편집국장에게 표절사실을 알렸고,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표절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A2면에 편집자 명의로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표절로부터 사과까지 12일이 걸렸다.⁵⁾ 워싱턴포스트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신문이라 할 수 있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도 2003년 표절로 홍역을 치룬 적이 있다. 제이슨 블레어(Jayson Blair) 기자는 텍사스 현지를 취재하지 않았음에도 현지 신문(San Antonio Express)이 인터뷰한 여성을 마치 자신이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지방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표절로 인정돼 결국 사임했다.⁶⁾

호르위츠 기자가 표절한 리퍼블릭 지 기사는 기퍼즈 의원 총격범의 기소에 관한 기사와 총격범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기사였는데, 이들 기사는 기자의 특별한 의견이나 평가가 들어 있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한 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칼럼과 같은 논평이나 해설기사와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이트 기사'도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작권침해와 표절을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목을 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들고 있다(제7조 제5호).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0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리거링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Expression)이 아닌 사상(Idea)은 아무리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표현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창작성이 전제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아닌 그것의 표현이어야 하고, 그것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작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으면 되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한다.

한편,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여 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이디어의 경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된 경우,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 자칫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아이디어를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것으로 보아 이런 표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데, 이를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라고 한다.

이 점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위 합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이 합체의 원칙을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결과적으로 합체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다르다. 전문가 들조차도 이를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예를 볼 수 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표절은 “일반 지식이 아닌 것으로서 타인의 독창적 생각이나 표현을 자신의 것인 양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는 법적 책임, 표절은 윤리적 책임으로 구별된다는 것 정도는 알려져 있으나, 그 이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핵심적인 차이 몇 가지를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 표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거나 저작권 보호대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도 독창적인 것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것도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흔히 타인의 아이디어는 가져다 써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저작권 영역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표절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상식이다.

대표적으로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타 방송사에서 비슷하게 베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포맷은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가져다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절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방송윤리 위반으



로 제재할 수는 있다.

둘째, 표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Passing off)' 한 데 비난이 모아진다. 따라서 남의 것임을 밝힌다면, 즉 출처표시를 세세히 밝히면 표절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 위싱턴포스트 사건이 표절로 인정된 것은 바로 호르위츠 기자가 이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리퍼블릭 지를 출처로 밝혔더라면 표절 책임을 면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절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출처를 다 밝히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물론 '자기 것인 양' 한 것이 아니므로 표절 책임은 피할 수 있겠지만, 저작권침해의 책임은 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으로 인용할 때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간혹 논문에서 출처표시를 꼼꼼히 달았으나 정작 자신의 글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신문기사에서도 선행 기사를 인용하되 너무 많이 인용하여 자신의 글이 거의 없다면 역시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침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는 단지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어야 할 것이다.

정직한 기사를 쓰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조사하고 목격자나 전문가를 면담하여 쓴 기사, 또는 폭넓은 취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다른 기자보다 앞서 쓴 기사에 대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출처표시 없이 마구 가져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바로 이곳이 표절금지 윤리가 기능하는 지점이다.

물론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학계의 학술저술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출처표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처표시를 스스로 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대변인의 발표와 같이 뉴스가 특정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어떤 뉴스매체의 특종이거나 어떤 취재원이 특정 매체에게만 그 정보를 준 것이 분명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지 않은 매체가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재판 또는 분쟁 중인 사실에 대

7) 이상, 언론이 출처표시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Jonathan Band and Matt Schruers, *Daster, Attribution, and Plagiarism*, 33 AIPLA Q. J. 1, 18-19 (2005) 참조.

8) 강남준·이종영·오지연, “신문기사의 표절 가능성 여부 판정에 관한 연구 : 컴퓨터를 활용한 형태소 매칭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신문학보, 제52권 1호(2008. 2), 442면, 각주 3번 (원출처 : N. Lewis, *Paradigm disguise: Systematic influence on newspaper plagiarism*,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2007)).

한 보도의 경우 추후 기사작성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것을 피하기 위해 출처를 밝히기도 하는데, 이 경우 견해를 밝힐 때에도 객관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출처로 제시하기도 한다.⁷⁾

그런데 위와 같이 기자들이 출처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문 기사나 칼럼 작성 시 타인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 그 출처를 대가란 쉽지 않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다. 이는 작성자 탓이라기보다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신문기사(칼럼 포함)에서 일일이 출처를 밝히면 기사의 간결성을 해쳐 기사작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렇다고 밝히지 않으면 표절의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표절을 면하여 기사를 쓰는 것을 아주 이상적이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성배(Holy Grail)’ 찾기에 비유하기도 한다.⁸⁾

사실 지면의 성격상 출처를 일일이 댈 수 없는 것이 언론매체의 특성이자 한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리낌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하려는 의도만 없다면 얼마든지 출처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학계에서와 같이 “Full reference”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에 따르면”이라든지, “...라고 말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작권침해는 법적인 영역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표절은 피해자가 피표절자(저작권자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의 발상자) 외에도 독자, 학계 등 동종 업계 종사자를 피해자군(群)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친고죄인 저작권침해와 달리 표절은 피표절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절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 사건을 예로 들면, 호르위츠 기자로부터 표절당한 리퍼블릭 지나 그 소속 기자가 표절을 이유로 호르위츠를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워싱턴포스트는 호르위츠 기자에 대해 표절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호르위츠의 표절로 인한 피해자는 리퍼블릭 지와 그 소속 기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워싱턴포스트의 독자들은 그 기사를 호르위츠 기자가 직접 현장(Tucson)을 취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았을 텐데,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cut and paste’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독자를 속인 것으로서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시킨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의 편집자는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던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사고문
(출처: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Sign In | Register | Jobs | Real Estate | Rentals | Cars | Print Subscription | Today's Paper | Discussions | Going Out Guide | Personal Post | Videos

The Washington Post Politics | Opinions | Local | Sports | National | World | Business | Tech | Lifestyle | Entertainment | Jobs | More

TOP POLITICS

[In the News](#) [NSA](#) [Tropical Storm Andrea](#) [D-Day](#) [Jeff Chiesa](#) [Putin's divorce](#)

Editor's Note: An apology

Published: March 17, 2011

Two articles published by The Post online and in its print editions earlier this month contained substantial material that was borrowed and duplicated, without attribution, from The Arizona Republic.

The articles described an indictment of Jared Lee Loughner for murder and attempted murder in the January rampage that wounded Rep. Gabrielle Giffords and the subsequent unsealing supporting a search warrant in connection with the case.

In the article about the indictment, which [appeared on The Post's website](#) on March 4 and on page A3 of the print edition of March 5, two paragraphs about a provision in federal civil rights laws were copied from the [Republic's work](#). The article also included without attribution other facts previously reported by the Republic.

The article detailing what investigators found in their search of Loughner's home, which [appeared online on March 10](#) and was published on page A3 in the newspaper of March 11, was an [article that appeared in The Republic](#). Ten of the article's 15 paragraphs were copied in whole or in part from an article that first appeared in the Republic.

It is The Post's policy that the use of material from other newspapers or sources must be properly attributed. The Post apologizes to the Arizona Republic and to its readers for this serious error.

© The Washington Post Company

또한 Pulitzer 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던 호르위츠 기자는 이와 같이 표절을 통해 손쉽게 기사를 써온 것이 사실이라면 어렵게 발품을 팔아가며(Legwork)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써온 대다수의 정직한 기자들(그들이 워싱턴포스트 소속이건 타사 소속이건)을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표절 기사를 토대로 기자의 명성을 쌓아올리고 그로 인해 수상을 하며 승진이나 그밖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었다면, 이는 경쟁 신문사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이다.



리거리스

9) 이 표는 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kpec.or.kr> 를 참조하여(2013. 5. 31. 방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체 규제 건수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위반 건수를,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 위반',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유위'으로 나누어 집계하여 만든 것이다.

끝으로 표절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윤리의 영역이다. 표절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윤리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문윤리강령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관련된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제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 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사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위 실천요강에 의하면, 통신 기사나 타 언론사 보도, 타 출판물, 그 밖에 사진, 시청각물을 인용할 때, 출처표시를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신문의 표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위원회의 기사 심의사업 실적으로서 규제에 관한 것이다.

〈표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사업 실적 2007~2012〉⁹⁾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신기사의 출처명시(8조 1항)	82	188	61	38	208	178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8조 2항)	356	134	49	21	69	122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8조 3항)	1				8	

10) 필자는 신문기사의 표절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자윤리의 회복을 역설한 적이 있다. 남형두, “기사 표절과 기자 윤리”, 한국일보 2010. 8. 5. 자 칼럼.

11) 뉴욕타임스는 2003. 5. 11. 자 1면 톱뉴스로 “Times Reporter Who Resigned Leaves Long Trail of Deception”이라는 제하의 전례 없이 긴 자체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 저작권 보호(8조 4항)	61	144	78	123	9	14
8조 소계	500	466	188	182	294	314
규제 총 건수	931	750	606	760	837	1,099
8조 위반 건수 / 규제 총 건수(%)	53.7	62.1	31.0	23.9	35.1	28.5

(‘8조 위반 건수 / 규제 총 건수’의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실적 가운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위반으로 인한 징계결정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도와 평론’,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보도준칙’,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편집 지침’, ‘명예와 신용존중’, ‘사생활 보호’, ‘어린이 보호’ 등 여러 가지 규제이유 중에서 표절과 관련된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위반으로 인한 규제 건수 비율이 낮게는 23.9%에서 53.7%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매체 전반의 표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¹⁰⁾

1년에도 수백 건의 기사 표절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신문계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워싱턴포스트의 호르위츠 기자나 뉴욕타임스 블레어 기자 사건과 같이 기사 표절로 해당 신문사가 통렬히 반성하는 문화가 있다면, 해마다 표절 기사로 심의 징계 건수가 수백 건씩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출처표시를 달지 않음으로 인한 표절이 언론계에 난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서 기사표절은 발각되기가 매우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에 관한 윤리의식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표절에 둔감하거나 서로 눈을 감아주는 잘못된 동류의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점에서 뉴욕타임스가 블레어 기자 표절사건 직후 편집국장을 해고하면서 이 스캔들을 뉴욕타임스 150년 역사의 가장 치욕적 사건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1면 톱뉴스에 실었던 것¹¹⁾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표절에 관한 윤리 규정 위반이 잦아지게 되면,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에는 신문매체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기사 표절에 관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